

보내는 사람

“캐릭터 또는 로고”

받는 사람

현역장교 입영 통지서

통지번호: _____

※ 뒤쪽 입영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 안내하는 내용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

구분	([]의무 []법무 []군종 []수의 [] 기본병과) 장교의 현역입영	
성명	생년월일	
세대주 성명	관계	
주 소		
입영부대		
모이는 장소	입영일시	

「병역법」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영을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○○지방병무청(병무지청)장

직인

유의사항

- 「병역법」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사람은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(홈페이지)에 공개합니다.
- 「병역법」 제8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.
- 질병으로 인하여 입영이 곤란한 사람은 입영일 연기원 또는 병역복무변경·면제신청서(재신체검사원)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만일, 연기 등의 신청을 하지 않고 입영하시더라도 입영 후 군 부대 신체검사에서 질병이 있다고 판정될 경우에는 귀가조치 될 수도 있습니다.

입영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

○ 입영 시 유의사항

가. 입영통지서,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및 병무청장이 지정하여 병역판정검사 당일 발급받은 신용카드(이하 "나라사랑카드"라 하며, 해당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만 해당합니다)를 지참하시기 바라며,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본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

나. 입교 시 두발 및 복장 등에 관한 사항은 「입교안내문」을 참고바랍니다.

○ 입영하기 전 건강관리 및 귀가

가. 입영 전 과도한 음주 또는 기름진 음식섭취는 혈압 및 지방간 수치를 일시적으로 상승시켜 본의 아니게 귀가될 수 있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입영 후 7일 이내에 입영부대 의료시설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하거나 15일 이상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귀가 조치됩니다.

– 치유기간 3월 미만: 치유기간이 지난 후 가장 가까운 입영일에 입영조치

– 치유기간 3월 이상 또는 치유기간 없음: 치유기간이 경과된 후 즉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

○ 병역복무변경·면제신청서 제출안내

-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병무청 지정병원 등에서 발행한 병무용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역복무변경·면제신청서를 지방병무청(병무지청)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처벌규정: 「병역법」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.
